##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



[시행 2020. 5. 1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-35호, 2020. 5. 1., 제정]

식품의약품안전처(의료기기정책과), 043-719-3786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24조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품 제조 ·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"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"이라 함은 조성성분과 함량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사용목적에 따라 규정화되어 별도 제조되었거나 이미 제조된 원료물질을 정제하여 얻어진 높은 순도의 표준물질을 말한다.
- 제3조(관리계획 수립 등)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이하 "식약처장"이라 한다)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.
  - 1.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제조·확립에 관한 사항
  - 2.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신규 등록 계획에 관한 사항
  - 3.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- 제4조(안전관리 자문) ①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표준품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21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(이하 "전문가위원회"라 한다)를 활용하거나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설치된 시험·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이용할 수 있다.
  - ②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 - 1. 표준품 세부 수급관리 계획 및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
  - 2. 표준품 분양가 산정에 관한 사항
  - 3. 표준품 등록에 관한 사항
  - 4. 표준품 품질시험결과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표준품 제조·확립·관리 및 분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수급관리) ① 식약처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을 제조·확립 등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식약처장은 전문가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자문 결과를 참고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을 등록·분양·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③ 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·분양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.
- 제6조(분양신청 등) ①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분양신청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식약처장은 분양신청서를 검토하여 분양신청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대장에 적어야 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분양신청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분양인수증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의 분양절차는 별표 1과 같다.
- 제7조(분양가격 등) 식약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의 포장단위별 단가를 정하고 별표 3에 따른 보유한 표준품의 분양 가능한 수량 및 분양가격표를 연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.
- 제8조(우선분양 등)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을 우선분양 할 수 있다
  - 1. 공중보건상 위해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
  - 2. 공중보건상 위해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기관의 장이 품질관리(시험검정)를 위해 분양을 요청한 경우
- 제9조(표준품 관리 등) 식약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의 사용내역 및 보유량을 점검·확인하고 사용내역 등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재검토기한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.

## 부칙 <제2020-35호, 2020. 5. 1. >

- 제1조(시행일)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표준품 분양신청에 관한 경과조치)이 고시 시행 전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